

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(제13조제2항 관련)

1. 시설기준·장비기준·인력기준

가. 시설기준

- 1) 응급실 시설은 서로 인접하고 다른 의료시설과 구별되어야 하며, 응급실과 응급전용 중환자실·입원실 및 수술실, 검사실·중재실·MRI실 등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근접성을 갖추어 설치·운영해야 한다.
- 2)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은 응급실 인근에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, 소아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 소아환자 진료구역도 응급실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3) 응급실 입구 환자 분류소에서 감염의사환자를 선별하고, 일반 응급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음압격리병상 등에서 격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4) 응급실 전용 시설기준

시 설	시 설 기 준	비 고
가) 환자 분류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·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추는 것 ·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	감염의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비치할 것
나) 소생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소 20㎡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,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	환자 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인접되게 설치할 것
다) 처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소 20㎡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,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· 감염방지를 위해 손세척이 가능할 것 	
라) 응급환자 진료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각 병상마다 상지·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는 것 ·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 · 1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	병상 간 간격은 1.5m 이상을 확보할 것
마) 중증응급 환자 진료 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구역으로 구성하고 무정전 시스템을 갖추는 것 · 각 병상마다 상지·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는 것 · 산소, 음압, 고압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 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8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	
바) 음압격리 병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 · 필터링된 급기·배기,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는 것 ·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·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할 것 ·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추는 것 ·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	일반격리병상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수에 포함됨
사) 일반격리 병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을 것 ·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·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비를 갖추는 것 ·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	
아)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각 병상마다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추는 것 ·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 ·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 · 병상 간 간격은 1.5m 이상을 확보할 것
자) 방사선실 · 일반촬영실 · CT촬영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체 전 부위 촬영이 가능할 것 · 산소와 음압 공급설비를 설치할 것 	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인근에 설치할 것
차) 응급전용 입원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· 병상당 4.3㎡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	당일 응급의료 책임자가 입원·퇴원을 결정할 것. 다만, 전문진료과 중환자실 병상인 경우 입퇴원시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를 받을 것
카) 응급전용 중환자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. 다만, 20병상 중 10병상은 전문진료과의 중환자실내 응급전용 중환자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·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 중환자실 규정을 준수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문진료과 중환자실 내 병상은 응급전용임을 표기하고 환자 대

		장을 관리할 것
타) 응급전용 수술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병원 내 수술실 중 하나를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것 · 응급환자 전용 수술실이 사용 중인 경우, 별도의 수술실 1실을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하여야 함 	응급전용 수술실 사용권한을 당일의 응급의료 책임자에 부여할 것
파) 보호자 면담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부로부터 시청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· 환자의 상태 설명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	
하) 전용 주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급실 입구에 인접하고,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· 응급환자 전용 표기가 되어 있을 것 	구급차 2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
거) 보호자 대기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소 100㎡의 전용면적을 갖출 것 · 입원환자의 인원수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	3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의시설설치가 가능할 것
너) 회의실	20명 이상을 수용하여 교육·회의할 수 있도록 시청각 기자재 등을 갖출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질 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등을 수행할 것 · 응급실과 인접하지 않은 공간에 설치 가능함
더) 재난 및 응급의료 지원실	재난, 교육, 의료지도 등 권역 내 응급의료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	

5) 의료기관 시설기준

시 설	시 설 기 준	비 고
가) 검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혈액성분검사(CBC), 혈액화학검사(Chemistry), 동맥혈 가스분석(ABGA) 및 요검사(U/A)가 가능할 것 · 심근효소검사, 혈액응고검사가 가능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4시간 운영할 것 · 응급환자에 우선 사용되도록 할 것
나) MRI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체 전 부위의 촬영이 가능할 것 ·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	
다) 중재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내시경실, 담관내시경실, 기관지내시경실 각각 1실 이상 갖출 것 · 혈관조영실, 심혈관조영실 각각 1실 이상 갖출 것 · 각 시설은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 	

	치할 것
라) 혈액은행	· ABO 및 Rh Typing, 교차 시험(Cross Matching), Coomb's Test 검사가 가능할 것
매) 주산기 시설	· 신생아실을 갖출 것 · 분만실을 갖출 것

나. 장비기준

1) 응급실 전용 장비

품명	개 수(단위: 개)						비고
	일반 구역	소아 구역	중증 구역	소생실, 처치실	중환자실	격리 병상	
가) 12유도 심전도기	1		1				
나) 심장충격기	1	1 (소아용 패드구비)	1	1	2	1	전원연결 없이 사용, 동기화 심 전환 가능할 것
다) 인공호흡기			5병상당 1	1실당 1	3병상당 1	5병상당 1	호흡방식 조절가능, 경고장치가 있을 것
라) 무 영 등				1실당 1			
마) 이동 X-선 촬영기	1					1	
바) 이동식 초음파 검사기	1						심초음파검사 가능할 것
사) 환자 감시 장치	5병상당 1	5병상당 1	1병상당 1	1실당 1	1병상당 1	1병상당 1	심전도, 혈압, 혈중산소포화도 측정이 가능할 것
아) 이동환자 감시장치	1						
자) 기도흡입기	1병상당 1	1병상당 1	1병상당 1	1실당 1	1병상당 1	1병상당 1	
차) 산소량 조절장치	1병상당 1	1병상당 1	1병상당 1	1실당 1		1병상당 1	
카) 급속혈액가			1		1		

온주입기							
타) 정맥 주입기	5병상당 1	5병상당 1	1병상당 1	1실당 1	1병상당 1	1병상당 1	약물 투여량의 정량 조절이 가 능, 경고장치가 있을 것
파) 보온포				1실당 1	1		가온이 가능할 것
하) 중심체온 조절유도기				1			
거) 심부체온 측정장비				1			
너) 이동 심근 효소측정기			1				
데) 연령별 기도 확보 장비 및 보조호흡 도구		1					
러) 소아를 위한 기타 연령별 기구·소모품		1					
머) 무선장비 및 전산장비	1						TRS 단말기 구 비, 응급의료정보 입력·조회
버) 구급차	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						응급실과 교신 할 수 있는 장 비를 갖출 것

2) 의료기관 내 확보해야 하는 장비

장 비	기 준
가) 뇌압감시장비	2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하며, 응급환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
나) 인공심폐순환기(ECMO)	
다) 지속적 신 대체 요법(CRRT) 장비	
라) 인큐베이터	

다. 인력기준

○ 응급실 전담 인력기준

인 력	인력기준	비 고
-----	------	-----

가) 의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: 5명 이상 ·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: 1명 이상 ※ 소아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· 응급실 전담전문의: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,000명을 초과하는 경우, 1명을 확보하고 매 10,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 ※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수에 포함 ※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의학과, 내과, 외과, 정형외과, 신경외과, 신경과, 흉부외과, 소아청소년과, 마취통증의학과,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확보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급실 중환자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· 응급실 일반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의사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※ 소아전문응급센터인 경우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는 별표 6의 기준을 별도 적용
나) 간호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·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 ·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,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 확보하고, 매 5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 ※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는 내원 환자당 추가 확보해야 하는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에 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급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전용 입원실과 별도로 할 것 ※ 소아전문응급센터인 경우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는 별표 6의 기준을 별도 적용
다) 응급구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재난, 교육, 전원관리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·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구급차 및 관련 인력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
라) 그 밖의 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간호사,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·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할 것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

2. 일반 운영기준(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)

가.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과 각 전문진료과의 당직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.

나.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예비병상, 응급전용 수술장 등을 확보해야 한다.

- 다.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용가능한 응급의료 자원의 현황, 주요 응급질환 별 수용가능 여부, 응급환자의 내원 및 퇴실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해야 한다.
- 라.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감염의사환자의 선별,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예방 시설의 운영, 동선분리 및 감염예방활동, 보호자 및 방문객 출입통제 등 응급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.
- 마.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치 및 제18조의3에 따른 중증도 분류의 지도 및 시행을 위해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.
- 바. 제18조의3에 따른 중증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. 다른 전문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호출해야 하며, 호출된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해야 한다.
- 사. 중증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최소화하되, 불가피하게 이송하는 경우 당일의 응급의료 책임자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직접 이송을 결정해야 하며, 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아.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진료,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어온 중증응급환자의 적극적 수용 등에 대하여,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매년 통과해야 한다.
- 자. 응급실 근무자 등은 소속, 전문과목, 면허·자격, 성명이 표기된 명찰을 달아야 하며, 면허·자격에는 전문의, 레지던트, 인턴, 간호사, 응급구조사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.
- 차.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 진료와 권역 내 재난·교육, 구급대에 대한 의료지도 등 그 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- 카.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에 규정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팀을 3개 이상 조직하되, 각 팀은 의사 1명 이상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,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.